

성노동자 표현의 자유 토론문 - 박경신

성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는 국제인권이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UN여성차별철폐협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UN성차별철폐위원회는, 성노동자 거의 전부가 여성인 상황에서, 성노동자에 대해 범죄자의 낙인을 찍는 것은 성차별이라면서, 수십년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 성노동을 합법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성제공사 처벌은 성매매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이니 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성매수자 처벌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만 성노동자도 지역적 상황적 예외없이 모두 처벌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도 2014년에 “성인이 서로 자발적으로 만나 성행위를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영역에 속하고, 다만 그것이 외부에 표출되어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때 비로소 법률의 규제를 필요로 한다. [여기에] 국가가 개입하여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간통죄 위헌). 대가에 의한 성제공이 “외부에 표출된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행위”일까요? 그럴수도 있지만 형사처벌로 막아야 할까요? 성은 사랑, 결혼, 출산과 깊은 연관이 있을 수 있는 행위이며 금전을 원인으로 성행위를 하게 되면 그만큼 성행위를 더욱 쉽게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성인들 간의 과도한 난교 상황은 성스러운 사랑, 결혼, 출산을 저해하여 도덕적 다수가 생각하는 ‘건전한 성풍속’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건전한 생활을 형사처벌로 강요해야 한다면 동성애도 범죄시하고 간통도 범죄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시각에서 현재는 2012년에 성알선자 처벌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성매매가 “성을 상품화”하는 것이라면서 금지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상품화된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로 금지할 수 있는 정당성이 갖추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 성스러운 것이지요, 상품화하면 형사처벌해야 할까요? 그럼 마사지사도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 성스러운 것이지요? 사교육 열풍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나 학원을 형사처벌하지 않으며 과외금지규정은 위헌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 현재는 2006년에 성매매알선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우리나라 성매매의 양태는 ‘강요된 성매매’의 형태를 띠고 있고 최소한 ‘중간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알선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목적이라면 성노동자까지 처벌해야 할까요?”

특히 성매매금지법이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성제공사”들을 범죄자의 낙인이 찍혀, 폭력적인 포주나 고객을 신고도 하지 못하고, 의료서비스 복지서비스에 배제된 상태에

서 경찰의 단속을 피해다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의 상품화’라는 도덕감정은 이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할 이유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일까요? 작년 말 집안 형편상 가출했다가 17살에 출산하여 지금은 7살이 된 아이와 병든 아버지를 부양하기 위해 성매매를 하고 있던 25세 여성이 경찰의 함정단속을 피해 투신자살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성매매여성들을 30만명에 달합니다. ‘성의 상품화’라는 도덕감정이 이 많은 사람들을 음지로 때로는 사지로 내몰 이유가 되는 것일까요? 게다가 성매매여성들은 고객의 폭력, 포주의 폭력 심지어는 경찰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어도 신고를 하기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폭력에 취약한 여성이 성매매여성들입니다.

사실 “성 상품화”론은, 사랑, 결혼, 출산과 관련될 수 있는 성을 사랑 또는 전인적 교류와 무관하게, 대가만으로 하는 영혼없는 행위를 배격하는 입장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5년에 “애정이 없는 성관계” 즉 “쾌락만을 위한 성관계”는 헌법상 보호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쾌락만을 위한 성관계”할 자유는 있고 “생계를 위한 성관계”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헌법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성매매는 자발적이라도 생계를 위한 선택입니다. 1억을 받더라도 생계를 위해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상황에서 비생계성매매는 있을 수 없습니다. 2013년 세계경제포럼이 135개국의 남성여성의 경제참여와 기회, 정치적 권한, 교육성취도, 그리고 보건수준을 조사하여 발표한 성(性)격차지수(GGI)에서 우리나라는 108위를 하였습니다. 직장에서의 성희롱 얼마나 많습니까? 또 2013년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은 남성보다 37% 정도 임금을 덜 받아 OECD 주요회원국 중 남녀임금격차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러 여자를 상대하는 남성은 도리어 선망의 대상이 되지만 여러 남자를 상대하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가혹합니다. 그런 사회적 낙인을 무릅쓰고 성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비생계형 성매매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회적 성차별에 밀려서 사회적 낙인을 감수하면서까지 생계를 잇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법적 낙인, 범죄자의 낙인을 찍어 동굴로 몰아넣어야만 우리의 도덕감정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헌법은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리어 성제공사처벌법은 여러 남자를 상대하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인 낙인찍기에서 비롯되었고, 남성이 아무런 책임감 없이 성욕을 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제공자를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는 관행에서 발전된 것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UN성차별철폐위원회 외에도 UN보건기구들도 성매매금지법이 성매매여성들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및 강제성매매 탈출을 어렵게 만든다며 합법화를 요구하였습니다.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UN여성기구 역시 2013년 성노동을 합법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014년 2월 유럽의회는 끈질긴 로비 공방 끝에 EU 내에서 성제공자를 처벌하지 않고 성매수자만을 처벌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제인권기구의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휴먼라이츠와치와 국제사면위원회는 2013년, 2014년

각각 성노동의 합법화를 정책기조로 발표하였습니다.

자 이런 성노동에 대한 정보도 차단해야 할까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물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행정기관의 결정에 의해 표현물을 차단 및 삭제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물리적 행위와 달리 표현은 위축효과에 취약합니다. 행정기관의 잠정적인 판단을 반박하여 표현물의 합법성을 입증하려는 수고를 포기하기 쉽습니다. 또 행정기관은 집권여당의 입김 때문에 중립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표현물이 불법이라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 별도의 책임이 부과되는 경우 합법적인 표현물의 위축효과는 더욱 증폭됩니다. 행정기관은 산업진흥 등의 다른 정책도 수행하기 때문에 쉽게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위축효과를 증폭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의한 온라인 표현의 자유 제한 즉 행정심의회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었습니다. Turkey와 한국이 유일했고 최근 몇 년 사이에 테러단체나 테러리스트들이 인터넷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자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행정심의회를 시작하였습니다. (NetzDG법, Avia법)

하지만 다른 나라들의 행정심의회는 보통 보편타당한 해악성을 지닌 표현물에 한정하여 이루어집니다. 테러나 기타 폭력을 선동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법 44조의7 1항 9호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 . 정보'도 불법정보로 정의하면서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똑같이 취급됩니다. 폭력 등의 명백한 해악에 이르지 않는 행정규제 위반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표현물 자체를 삭제, 차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한 제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실명제를 집행하는 국가라고 해서 비실명휴대폰을 소개하는 게시물까지 삭제차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비실명휴대폰을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비실명휴대폰의 이용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 웹사이트를 통해 국민들이 유용한 정보에 접할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몇 년전까지만 해도 여타 이유로 탐정서비스의 제공은 국내에서 불법이었고 이에 따라 탐정서비스를 광고하는 웹사이트들의 국내유입이 차단되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나가서 탐정을 채용한다고 해서 불법이 되는 것이 아닌데 국내인들이 탐정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습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내인들의 알권리에 대한 제한이 됩니다. 물론, 해외 도박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해외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장개설이라는 위법행위를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원격으로 국내에서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도박과 같이 보편타당한 해악을 규제하는 행위를 매개하는 정보가 아니라 문화적인 그리고 연혁적인 이유로 국내에서만 특이하게 금지되는 행위(예를 들어 탐정서비스)를 매개하는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국내인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오픈넷은 여성들이 임신중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던 위민온웹이 낙태죄가 있다고 해서 차단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시하고 있고 성매매금지법이 있다고해서 여성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삭제 차단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